

사랑마루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랑마루주간보호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기능 및 조직)

- ① 본 사랑마루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 시설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중풍 등 어르신을 낮동안 입소시키거나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② 관리책임자 1인과 요양사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 관리책임자 외에 수급자의 수에 따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차량운전기사, 조리원을 필요한 만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사랑마루주간보호센터의 조직은 아래 표와같이 운영한다

구 분	직 종	명	자격요건	역할
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6	사회복지사	주간보호센터와 겸임
주간 보호 센터	센터장	1	사회복지사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겸직
	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행정, 어르신케어
	간호사	1	간호조무사	Care Plan작성 및 어르신들의 인지훈련
	행정보조	1	사무원	사무보조
	요양보호사	7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지원
	조리사	1	조리사자격증	영양관리, 조리
	운전기사	1	보통1종	송영 및 시설관리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3조(이용정원) 주간보호의 이용 정원은 49 명으로 한다.(단, 인지지원등급은 정원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대상자
2. 노인성 질환 또는 치매,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는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4조(이용자모집)

- ① 센터장은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모집한다.

제4장 입소계약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제10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① 계약 성립은 공단이 제공한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사회복지사의 총평에 의거 공단에 통보된 급여계획을 근거로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간 서명이 된 시점에 성립한다.

② 다음 사유 발생 익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공단에서 등급 외로 통보되어 이용자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
3. 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6조(계약목적)

주간보호센터를 통한 공식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수급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이용 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한한다.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① 주간보호

재가 급여 (주·야 간)	이용시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이상~6시간미만	41,820	38,720	35,750	34,120	32,490	32,4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이상~13시간미만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0
	월 이용료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월간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이 부담한다. - 본인부담금 · 일반(15%)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전액 무료(비급여 자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9%, 6%)						
비 급여	- 식비 : 일일5,000원 (일식 : 3,000원 + 간식비2회 : 2,000원) - 이,미용비 및 목욕 무료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기타 비급여	장기요양 등급이 없거나 일반 장애자가 비급여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당 이용금액은 장기요양급여비에 준하여 부담한다.	

③ 방문목욕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차량이용 (차량내)	88,990
나-2	차량이용 (가정내)	80,230
나-3	차량 미이용	50,100
기타 비급여	장기요양 등급이 없거나 일반 장애자가 비 급여로 방문목욕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용금액은 장기요양급여비에 준하여 부담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①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시설로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5장 이용료 및 비용변경과 절차

제11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방법,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액수 등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변경확인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받는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1. 서비스 종류별 이용료는 고시된 보험수가에 의하며, 본인부담액은 매회 서비스 제공일에 수납이 원칙이나 상호 계약에 의거 제공일 다음달 15일 이내에 수납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은 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통보된 익월부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 수납시 40% 또는 60% 경감 수납한다.
 4. 보험수가에서 정한 월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계획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이미용 등 비급여 항목 서비스 제공 계약체결로 발생한 비급여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 부담

제12조(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 ① 주간보호
 1. 프로그램 : 미술치료, 음악치료, 노래교실, 웃음치료, 실버레크레이션, 치매예방체조, 생신잔치, 어버이날 행사, 명절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성탄절 행사 등
 2. 간호 및 처치 : 일일건강체크, 복약지도, 건강검진, 전염병예방관리, 물리치료 등
 3. 건강관리 : 아침 건강체조, 생활체조, 실내스포츠 등
 4. 사회적응 : 야외나들이행사, 종교활동, 마트 견학 등
 5. 신체활동지원 : 중·석식서비스, 간식서비스, 양치·용변지도, 위생관리(손, 발톱), 목욕서비스, 미용서비스, 송영서비스
 6. 가족지원 : 가족상담, 가족간담회 및 작품전시회
 7. 사례관리 : 입소상담, 사례회의

②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의 종류	지원의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유지.증진/화장실이용하기
일상생활 지원	취사/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개인활동 지원	외출동행/일상업무 대행
정서지원	말벗/위로/격려/생활상담/의사소통지원/그 밖의 서비스

③ 방문목욕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유지,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케 함.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 ① 각 서비스의 비용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수가 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모든 서비스 제공 시 18시~22시는 20%, 22시~06시와 휴일에는 30%를 가산
- ③ 방문간호사의 가산금과 방문간호 시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 등은 수급자가 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④ 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
 1.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해당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내용통보서 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⑤ 비급여 비용

가.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비급여자는 수가의 100%를, 장기요양등급자는 15% (일반인), 6% 또는 9%(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를 부담하며,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무료로 한다

나. 식비는 1식에 3,000원 간식은 1,000원으로 한다

다. 이.미용비 및 목욕비용은 무료로 한다

*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4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서비스 제공 시간 중에 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거 처리하며, 이 경우 기관의 배상책임은 면책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피해를 입거나 심장마비 등에 의한 갑작스런 사망을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